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국내 농가의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자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 가축 사료용 옥수수 종자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사료 자급화에 기여하고자 종자용(과종용) 옥수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30톤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4.4.17.~4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품목번호 1003.90-1000 다음 란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품목번호	품명	2024년 시장접근물량		
		현행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1005	옥수수	247톤	130톤	377톤
10 0000	종자용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071290 20	그 밖의 채소			
071290 20 9	기타			
071290 20 91	스위트콘(종자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